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궁역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980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8월 09일

발 의 자: 남궁역, 강석주, 고광민,
김경훈, 김영옥, 김영철,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지향, 김태수, 김혜영,
남창진, 문성호, 박춘선,
서상열, 신복자, 옥재은,
윤종복, 이영실, 이용균,
이종태, 임춘대, 장태용,
최민규, 허 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28명)

1. 제안이유

- 유아동네숲터에 자연물(통나무, 나뭇가지 등)로 유아숲 체험시설이 설치되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되어 유아이용시 안전사고가 우려됨. 어린이 놀이터의 놀이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과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유아숲 체험시설은 설치기준이나 안전기준이 없으며, 일상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유아숲 체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 가. 유아숲 체험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시장은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제4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유아숲 체험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유아숲 체험시설의 조성 등)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6조(유아숲 체험시설의 조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시장은 유아숲 체험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유아숲 체험시설의 조성 등)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유아숲 체험시설의 조성 등)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의 지원대상 및 규모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4. 덧붙이는 의견

- 2024 서울시 예산서 내 안전관리와 관련한 비용에 대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며, 실제 사업진행 시 지원대상, 규모 등이 달라질 경우 소요비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유아숲 체험원 노후시설물 재정비 = (대상)강북구 등 기 조성된 유아숲체험원 77개소
(규모)대상지별 10,000㎡ 내외
= 77개소 × 약 5,584천원
= 430,000천원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계분석관 김지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